

[별표 2의2] <개정 2008.8.20>

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
등(제7조의6관련)

1. 평가대상

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·운용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

2. 평가기준

구분	평가항목
인프라 구축 정도	도축검사 라인, 구내 조경, 민원·악취 발생, 폐수처리, 도축장내 식욕포장비율,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,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
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운용 실태	도축장의 위생관리·시설관리·위해요소의 분석·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운용 실태

3. 평가절차 및 방법 등

가. 평가 수행기관 또는 단체는 평가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나. 평가방법에는 현장실사가 포함되어야 한다.